

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 마련

국토교통부,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환경부
2019. 5. 28.

정부는 2020년 7월 공원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대책 마련에 나선다. 이를 통해 우선관리지역*과 국·공유지 등을 포함해 최대 220km²에 대한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기존 대책(2018.4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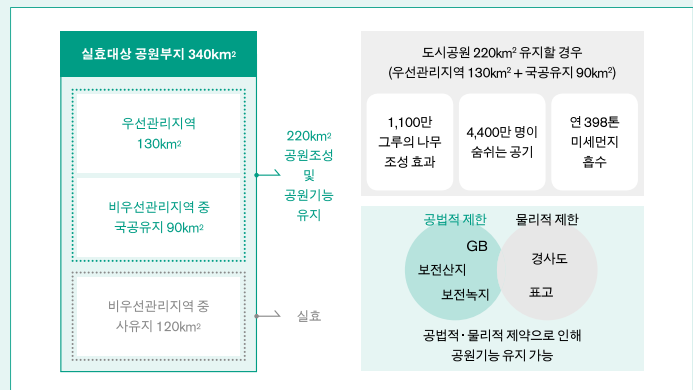
먼저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율을 현행 최대 50%에서 광역시·도를 대상으로 70%까지 확대하며,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한도 제한에서 예외를 허용**한다. 이와 함께 기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비해 공공성이 높고 추진기간이 짧은 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하는 등 LH 공공사업을 통해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. 이 밖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***은 행위제한으로 공원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데, 정부는 해당 제도 개선과 토지소유자 부담의 최소화를 통해 공원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.

신규 대책(2019.5.)

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가운데 약 25%에 해당하는 국·공유지 90km²에 대해 정부는 연말까지 현지조사를 벌여 공원기능 유지가 필요한 대부분의 국·공유지를 10년간 실효 유예하고, 지자체의 공원관리 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.

또한 공원조성에 필요한 심의·평가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공원 종류, 공원조성 주체 등 공원조성 방식의 다양화를 꾀한다. 정부는 지자체에 공원조성을 위한 노력도를 반영해 우수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, 우수공원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공원을 조성한 지자체를 시상하는 등 공원의 질적 향상뿐 아니라 지자체의 공원조성 노력 의지도 끌어올릴 방침이다.

- * 공원기능을 상실하는 경우, 주민이용 제한 및 난개발이 우려되어 공원기능 유지가 곤란한 지역
- ** 현재 채무비율 25% 초과 시 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 허용
- ***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여가·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



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기대효과

자료: 국토부, 기재부, 행안부, 환경부(2019), "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, 시민단체가 함께 도시의 허파 지켜낸다", 5월 28일자 보도자료.